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2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22276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시 ○○청장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구합2165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27.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17,223,5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2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변경한다.

【 라. 원고는 2022. 4. 6. 비법인사단인 A단체과 A단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17,223,540원(= 취득세 15,165,100원 + 지방교육세 1,299,860원 + 농어촌특별세 758,58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하였고, 2022. 4. 11.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A단체은 2022.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2

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에 있어 취득시기에 관하여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존재하던 A단체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법인이다. 결국 A단체과 원고의 법적 성격은 다르고, 소유 형태도 총유와 소유로 구분되며, 수십 년간 존속한 A단체을 설립 중의 사단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민사법적 차이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단체과 원고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주관적 실질에 있어서 A단체이 원고로 사실상 조직이 변경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그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없으므로(반면에 상법의 경우에는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제24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A단체이 원고로 변경된 것에 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A단체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경우에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3) 따라서 원고가 A단체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2-22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